



보도시점 2023. 5. 15.(월) 16:00 배포 2023. 5. 15.(월) 10:00

## 항만 배후단지 개발 활성화로 기업의 투자활력 높인다 - 국제 수출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만물류분야 8개 개선고제 발표 -

- ▷ 규제혁신추진단, 해양수산부와 협업하여 「항만물류분야 규제합리화를 통한 수요자 편의증진방안」 마련
- ▷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절차 개선으로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지연 예방
- ▷ 광학문자인식(OCR) 기술을 활용한 입출항신고 자료 입력방법 개선
- ▷ 대형선 입항이 용이하도록 양곡부두 배치를 조정하여 양곡물류의 효율적 처리 지원

○ 기업 A는 매출액 1,000억 원 규모의 중견 물류기업으로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항만배후단지 내 사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준비해 왔다. 그러나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과 별도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반영을 위한 협의가 길어지면서 관련 투자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번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절차 개선으로 앞으로의 계획 확정이 원활해지면서 보다 신속한 투자집행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 기업 B는 국내 항만에 입항하는 해외 선사를 대리하여 입출항신고와 물류수속을 처리해주는 소규모 지방해운대리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선박의 입출항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와 수속을 마쳐야 하나 선원·탑승객정보, 화물품목코드를 정보시스템에 올리기 위한 단순 입력업무에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관련 인력을 충원하는 등 회사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번 규제개선(광학문자인식기술 도입 등 입력편의성 증진)으로 정보입력 소요시간을 단축하게 되어 근로자의 근무여건이나 경영환경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규제혁신추진단(이하 추진단)과 해양수산부는 「항만물류분야 규제합리화를 통한 수요자 편의증진방안」을 마련하여 5월 12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고 시행키로 하였다.
- 이번 개선안은 수출입 활동의 기·종점인 항만에서 항만 이용자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항만 이용편의를 증진하여 자유로운 경제 행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 추진단은 2022년 9월부터 항만물류협회, 해운대리점협회, 사료협회, 항만이용자협회, 항만배후단지물류협회, 관련 연구기관 등 폭넓은 수요자 의견수렴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해양수산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등 4개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안을 검토하였다.

□ 이번 개선안은 항만물류 프로세스 3개 분야\* 8개 과제로 구성되었다.

\* (분류) 항만/배후단지 분야, 입항/출항 분야, 선적/하역 분야

- 항만/배후단지 분야에서는, ①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변경절차를 개선하여 항만개발계획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한다. 이로써 그간 항만배후단지 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항만개발계획과 별도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데 기업들이 들였던 절차적 부담과 비용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②항만구역 내 친환경 에너지 관련시설의 설치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항만법을 개정하고, ③항만물류분야 조사·연구기관에 항만물동량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하여 예측가능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항만정책의 신뢰도를 높일 예정이다.
- 입/출항 분야에서는, ①선박 입·출항 신고서류 입력방식을 간소화하기 위해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광학문자인식기술)을 활용하여 민원인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신고오류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하며,
  - ②여수·광양항 등 인접항만 입출항시 입출항 신고를 계속 반복했던 선박의 중복 신고 불편을 해소하고(2023. 3. 시행), ③항로·정박지·선석이 적절한 수심을 유지하도록 항로 등 수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준설 필요 지역을 신속히 파악하여 적기에 준설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비관리청(민간) 준설공사 허가기간을 현행 20일에서 14일로 단축하여, 수출입 선박이 원활하게 항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선적/하역 분야에서는, ①항만별 취급 물동량을 고려한 항만 급지 구분 및 검수사업 등록기준 인원 조정으로 검수시장 질서를 안정화한다.
  - ②평택당진항, 인천항, 군산항 등 주요 양곡과 사료 취급 항만에 대한 양곡 취급 물동량, 수요전망, 운송체계 등에 기초하여 대형선 입항이 가능한 평택당진항 양곡부두의 증설 여부를 적극 검토한다.
- 정부는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항만배후단지, 수출입기업, 해운선사 대리점 등 다양한 항만이용 주체들이 겪고있는 불편을 해소하고, 향후에도 항만물류분야 규제합리화를 통한 수요자 편의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붙임 1] 세부 개선과제 (총8건)

[붙임 2] 인포그래픽

담당 부서 <총괄>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책임자	과장 오영곤 (02-3778-3440)
		담당자	전문위원 박정천 (02-3778-3575)

담당 부서 <공동>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책임자	과장 홍근형 (044-200-5160)
		담당자	서기관 김수정 (044-200-5166)



항만관련계획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불일치 해소(산업부, 해수부)

**현행**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과 상이한 항만개발계획은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 변경을 선행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항만개발사업 지연 및 행정 비효율 발생

**개선** 「경제자유구역법시행령」상 경미한 사항의 범위 확대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업무의 위임범위 확대로 항만개발계획 변경 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23.7월~)

- 「경제자유구역법시행령」상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 확대
- 시·도지사(경제자유구역청장)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개발계획 변경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

**효과** 민간투자 촉진 및 원활한 항만개발·운영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기대

항만구역 내 친환경 에너지 관련시설 확대(해수부)

**현행** 항만구역 내 수소·암모니아 인수·저장시설, 암모니아를 활용한 수소제조 시설,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관련시설을 개발하기 위한 항만법상 근거 조문 명문화 필요

**개선** 항만법상 반영이 필요한 친환경 에너지 관련 인수, 저장, 보관, 유통시설 등에 대한 수요 확인 후 법령개정 추진 ('23.하반기~)

**효과** 항만 내 친환경 에너지 시설 도입 확대

항만물류데이터 활용 확대로 정책신뢰성 제고(해수부, 관세청)

**현행** 해수부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은 관계 국책기관에서 일부분에만 활용하고 있으며, 관세청의 통관 관련 데이터도 일부 접근에 한계

**개선** 데이터를 국제 물류에 대한 분석·예측·연구를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물류관련 대학, 관련 벤처기업·빅데이터 분석기관 등에 공유 ('23.3월 시행)

**효과** 정책 수립의 정확성 제고 및 예측 가능한 유용 정보의 제공

## ✓ 입출항 신고자료 입력방법 개선(해수부, 법무부, 관세청)

**현행** 선박 입출항시 제출하는 신고서류 입력 간소화로 민원안의 불편해소 및 항만 경쟁력 강화

- 개선**
- ①첨단 AI 활용 광학문서인식기술을 선박 탑승자 정보 입력업무에 도입 ('23.12월)
  - ②해운대리점에 '품목코드 자동기재(추천) 서비스'를 제공, 선사에는 '코드 검증 API'를 제공 ('23.6월)

**효과** 신고제출[정보입력] 노력시간 절약으로 항만 및 수출입 경쟁력 강화 기여

## ✓ 인접항만 입출항 절차 간소화(법무부, 관세청)

**현행** 여수·광양항 등 인접 항만의 경우 항만사정에 의해 접안 하역하다 항계밖 정박지에 정박 후 재입항시 세관과 출입국관리소는 다시 입출항신고를 해야하는 불편

- 개선** 세관과 출입국관리소의 입출항 중복 신고 간소화
- ①관세청 내부규정 정비 시행 ('23.2월 시행)
  - ②법무부 내부규정 정비 시행 ('23.3월 시행)

**효과** 항만입출항 편의개선을 통한 불편해소 및 항만 경쟁력 강화 기여

## ✓ 항로와 정박지 유지준설 체계 개선(해수부)

**현행** 항로 개설시 계획수심이 확보되었으나 서해안의 특성상 일부 해역에서 계획수심이 확보되지 않아 선박 입출항에 지장 초래

- 개선**
- ①비관리청 준설공사허가기간 단축('항만법' 제9조 개정, 20→14일) ('23.6월~)
  - ②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 (주요 항로와 정박지 수심에 대한 정기적 기록 관리, 항만이용자 의견수렴 등) ('23.4월~)
  - ③선박의 안전한 통항 수심 확보를 위해 적기 준설예산 확보 ('23.12월)

**효과** 대형선박의 항행 원활화로 수출입 물류비 감축

## ✓ 검수업 등록기준 합리화(해수부)

**현행**      검수업 등록기준이 항만 급지별로 차등을 두고 있으나 취급 물량 등 여건에 맞지 않는 상황

**개선**      항만별 물동량을 고려하여 항만 급지 구분과 검수사업 등록기준 인원 재조정  
①등록기준 재검토 용역시행 (~'23.12월)  
②「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개정 ('24.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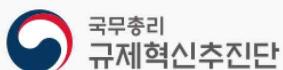
**효과**      검수시장 질서가 안정화되어 검수 물량을 적기 소화하여 수출입 물류비 감축

## ✓ 대형선 입항을 고려한 양곡부두 배치 조정(해수부)

**현행**      항만별 접안능력 차이에 따라, 대형 양곡선은 평택·당진항 등 접안능력이 높은 양곡부두에 1차 접안 후 군산항, 인천항 등에 2차 하역

**개선**      양곡 물동량 및 대형 양곡부두 필요성 재검토 ('23.12월)  
-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 전 관계기관 의견수렴, 물동량 전망, 전문기관 검토 등을 거쳐 대형 양곡부두 필요성 검토  
- 평택·당진항, 인천항, 군산항 등 주요 항만에 대한 양곡수요 전망치, 운영사 여건, 접안능력·항로, 양곡선 전망, 체선율 등을 종합 고려

**효과**      양곡물류의 효율적 처리 및 관련 산업 활성화



# 항만물류 현장의 불편, 까끔미 없애겠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줄이고, 정책 참여자의 편의는 늘리고



## 항만·배후단지 분야

### 항만배후단지 신속 개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과의  
일치성 확보



### 항만물류데이터 활용범위 확대

연구기관의  
데이터 접근  
허용



### 국내 친환경 에너지 유통망 확대

항만 내 친환경에너지  
시설 도입 근거  
명문화



## 입항·출항 분야

### 간편한 입출항 절차

OCR 기술을 활용한  
선원/탑승객  
입력 편의 개선



### 선박 일시 이동시 입출항 절차 간소화

선박 일시 이동시에도  
매번 신고해야 하는  
불편사항 개선



### 대형선박의 원활한 항행 지원

항로, 정박지  
유지준설 체계  
개선



## 선적·하역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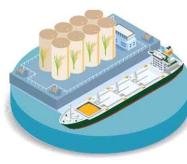
### 항만 검수업 등록기준 합리화

항만별 물동량변화를 고려한  
검수업 기준 마련



### 원활한 양곡물류 처리

대형 양곡선박 원활한 입출항을  
위한 양곡부두 증설검토



## 항만물류 현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

1

물동량 정보 공개는  
더 폭넓게,  
입출항 정보 입력은  
더 쉽게



2

항만개발계획  
변경절차 간소화로  
사업추진은  
더 신속하게



3

항로 정박지  
수심 정비로  
선박운항은  
더 편안하게



4

친환경 에너지시설  
확대로  
항만 내 탄소발생은  
더 적게

